

제12대 서울특별시골프협회장 선거

임원의 결격사유

서울시골프협회 규약 제26조 제1항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본 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8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<개정2019.3.11>
 9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개정 2019.3.11>
 10. 삭제 <개정 2018.3.21>
 11.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(다만,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·성폭력, 횡령·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)<개정 2019.3.11>
 12. 국회의원 및 시의원·구의원
 13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<신설 2019.3.11>
 14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2019.3.11.>

서울특별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